

문서번호	안전치수방재과-10984
결재일자	2016.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안전재난관리팀장	안전치수방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석규	유동호	신상식	05/23 代구자호
협 조			

▷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련 ◁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및 홍보캠페인 결과 보고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안 전 치 수 방 재 과)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및 홍보캠페인 결과 보고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중 실시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및 홍보캠페인 실시결과를 보고 드림

I 개 요

- 일 시 : 2016. 5. 17(화) 14:00
- 장 소 : 구의로 4길(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 주 관 : 광진소방서, 교통지도과, 안전치수방재과

II 훈련결과

- 참여인원 : 58명
 - 광진소방서, 구·동 직원, 주민, 지역자율방재단
- 훈련내용
 - 소방통로 확보, 비상 소화장치 출수 훈련 실시
 - 진입구간내 불법주정차 계도 활동
 - 불법작치물, 장애물 제거
 -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안내문 배부 등

■ 훈련사진





소방출동하는 생명로! 길터주기에 우리 모두 동참합니다!

내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이런곳에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지정장소 외 물건적치 등을 하지 않습니다!



사례1 좁은골목, 길오름이



사례1 시장내 황색선 밖 물건적치 금지



사례2 소방통수시설 5m이내



사례1 아파트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사례2 도로 위 적재물, 가판대 금지

- ◆주택가 이면도로 등 소방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 ◆아파트 내 「소방차량 전용주차선」 및 진입로를 확보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 ◆시장내 지정된 좌판구역 외 노점행위 및 차광막 설치로 긴급차량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 ① 소방차의 통행을 위하여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 ②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 ③ 긴급차량(화재, 구조, 구급차)통행시 좌·우측으로 우선 양보 합니다.

근거 및 범위 1. 소방기본법 제21조·제25조·제28조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도로교통법 제29조·제33조·제34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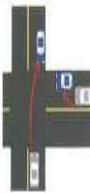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1. 교차로



교차로를 피해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2. 일방통행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3. 편도 1차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우선 또는 일시정지

4. 편도 2차로



긴급차량은 1차로로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

5. 편도 3차로 이상



긴급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

6. 횡단보도



구급차가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입니다.
「화재진화골든타임(Golden Time)」을 지킬 수 있게 협조해 주세요.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1. 점포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비치
2. 시장 내 황색선 밖 물건 적치행위 금지
3. 가연성 천막 사용금지 및 접이식 차광막 설치
4. LPG 가스기기 및 용기 관리 철저

